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34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전주혜·유경준·김석기

강대식 · 윤두현 · 조수진

김정재 · 서일준 · 김미애

허은아 · 윤창현 · 윤한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과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 정하고 있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유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해야 할이유가 없고, 경력단절 후 다른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장려를 위해 동일한 업종으로 제한하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 요건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여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기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u>2020년</u> 12월 31일까지	<u>2025년</u>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1.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	
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
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다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
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0 (1) 7)

2. • 3. (생략)

② ~ ⑥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